

1. 의결주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0.9퍼센트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폐지되고, 정액급식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과 정액급식비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입법예고(2021. 3. 11. ~ 3.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의 학교 (이하 이 항에서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13만원”을 “14만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급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별표 2]

검사의 봉급표(제7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직명	호봉	봉급액
검찰총장		8,517,300
검찰총장 외의 검사	17	8,504,800
	16	8,488,500
	15	8,006,900
	14	7,527,700
	13	7,097,800
	12	6,735,000
	11	6,560,100
	10	6,354,300
	9	6,010,500
	8	5,600,700
	7	5,247,500
	6	4,915,900
	5	4,596,000
	4	4,273,900
	3	3,962,600
	2	3,652,000
	1	3,241,2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u>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만 지급한다.</u>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u>「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
제11조4(정액급식비) ① <u>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u>	제11조4(정액급식비) ① ----- ----- <u>월 14만원</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4210